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발의일자 : 2019년 10월 11일
- 나. 발 의 자 : 박정자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8일
- 라. 상정일자 :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9. 10.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정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위원회 관련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구체화(안 제5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정옥)

- 본 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조례의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법제처의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해촉 사유가 명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현행 조례의 위촉위원 해촉 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를 빼는 건 타당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란 용어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5조 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수정함.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166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19. 10. 21.

제안자: 이규선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의 위촉위원 해촉 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를 빼는 건 타당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란 용어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5조 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수정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p>	<p>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장애인복지관련”을 각각 “장애인복지 관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제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를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u></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 (목 적) ----- <u>제13조</u> 에 따라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u> ----- -----.</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장애인복지관련</u>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u>장애인복지관련</u>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 2 조 (기 능)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장애인복지 관련</u> ----- ----- 2. <u>장애인복지 관련</u> ----- -----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p>	<p>제3조(구성) ①-----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p> <p>②-----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u>----- -----</p>

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3. (생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

③-----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3.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

③----- 남은
기간-----.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u>1인</u>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u>장애인복지 담당주사</u>가 된다.</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 ----- <u>1명</u> ----- ----- <u>장애인복지</u> <u>업무</u> <u>담당팀장이</u> -----.</p>
<p>② (생략)</p> <p>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수당 등) ----- ----- <u>범위</u> -----. ----- ----- -----.</p>